

특 허 법 원

제 2 5 부

판 결

사 건 2016나1967 상표사용금지 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정경모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피고, 피항소인 2. 주식회사 D

대표이사 C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3.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오

담당변호사 강경구

제 1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3가합16044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30.
판 결 선 고 2019. 2. 22.

주 문

1. 이 법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 감축되거나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 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부분(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1,000,000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8.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1. 부터 2019. 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 C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의 항소 비용(청구취지 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8. 10. 31.자) 부분이 피고들에게 최후로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상표권침해행위의 금지 및 침해조성물 폐기와 2011. 7. 28.부터 2014. 6. 30.까지의 피고들의 상표권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35,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상표권침해행위의 금지 및 침해조성물 폐기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고, 2011. 7. 28.부터 2016. 6. 30.까지의 피고들의 상표권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부청구로서 320,000,000원(2011. 7. 28.부터 2014. 6. 30.까지의 손해배상금 300,000,000원 +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의 손해배상금 2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금원지급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지연손해금 부분 포함) 및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 C는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8. 10. 31.자) 부분이 피고들에게 최후로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D은 피고 B,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8. 10. 31.자) 부분이 피고들에게 최후로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피고 B, C] 제1심판결의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B,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제1, 4, 5, 7, 9, 11, 24, 25, 32, 38, 39, 40, 41, 45, 46, 50, 51, 76, 77, 78, 80, 81, 84, 85, 86, 90 내지 94, 96, 98호증, 을 제1, 2, 3, 5 내지 8, 11, 15, 17, 18, 31, 40, 106, 107, 121, 12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1) 원고는 부(父) E과 모(母) F의 딸로서, 아래 다.항 기재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던 자이다.

2) 피고 D, B는 미용용품, 메디칼 용품 등의 제조, 도소매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D,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D,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부 E과 피고 C의 피부자극기 사업 추진 경과

1) 원고의 부(父) E은 2007년 하반기 무렵 종래부터 미세침 치료법(Microneedle Therapy System, 미세한 침으로 피부에 구멍을 내 약물 침투를 증가시켜 콜라겐 합성을 자극하는 기술)에 사용되던 피부자극용 미세침 롤러를 개량하여 이를 'Diskneedle Therapy System' 또는 그 영문 이니셜인 'DTS'로 지칭하였다.

2) E과 E의 처(妻)로서 '살루스'라는 업체의 대표자인 F은 2007. 12. 10. F 명의로 피고 C와 사이에 'Diskneedle Therapy System' 방식이 채용된 피부자극기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생산, 판매,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합의(이하 '이 사건 기본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 목적

F이 개발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각각의 역할을 명시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 F의 역할

- F은 이 사건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전담하고 생산된 이 사건 제품 및 관련 부품을 피고 C에게만 공급한다. F은 보다 나은 품질을 위해 계속적으로 연구와 개발을 병행한다.
- F은 그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없고 DTS 월드[현 '살루스'사(社)가 'DTS 월드'로 상호 변경 예정]가 지적소유권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품의 생산을 전담한다.

○ 피고 C의 역할

- 피고 C는 F이 생산한 이 사건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며, 국내 및 해외 수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한다.

- 이 사건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금형을 피고 C의 비용으로 준비한다.
- 향후 있을 해외 특허 출원자금을 지원하고, 이때 F과 피고 C를 공동출원인으로 한다.

○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7년으로 하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기간이 연장된다.

○ 기타

피고 C는 가칭 '주식회사 디티에스 인터내셔널'이라는 판매회사를 설립하여 무상으로 F에게 회사 지분 30%를 제공하고, 또한 F은 생산회사인 살루스[DTS 월드사(社)로 상호 변경 예정]를 법인 전환하여 동일 지분 30%를 피고 C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3) 이 사건 기본합의에 따라, E은 2007. 12. 11. F 명의로 이 사건 제품 제조를 위해 '디티에스(DTS) 월드'라는 상호로 디스크니들 등 제조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피고 C는 2007. 12. 20. 위 '주식회사 디티에스 인터내셔널'에 해당하는 피고 D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피고 D은 2007년 12월 무렵 의료기기 허가절차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 31. 이 사건 제품 판매를 위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마쳤으며, 2008. 3. 25. E과 사이에 '디티에스 월드'의 대표 F 명의로 피고 D이 F에게 이 사건 제품 생산을 위탁하고, F은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하여 피고 D에 납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가공 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합의와 위 임가공 계약을 합쳐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8. 4. 30. 중앙플라텍을 운영하는 권석웅과 사이에 피고 D이 권석웅에게 이 사건 제품의 부품 금형 임가공 및 개발된 금형에 따른 제품 생산을 위탁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제품 관련 금형 및 사출성형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품 생산·판매를 준비하였다.

5) 그러나 E이 '디티에스 월드, 대표자 F' 명의로 2008. 7. 3. 피고 D에 해외 특허 출원비용 등으로 합계 약 5억 원의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2008. 7. 6. 위 금액 중 약 1억 8,500만 원의 자금지원을 추가로 요청하였으며, 2008. 7. 9. 무렵 위 1억 8,500만 원과 이 사건 임가공 계약에 따른 원, 부자재 비용으로 매월 2,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6)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F에게, 2008. 7. 28. 이 사건 계약에서 명시한 사항 이외의 과도한 추가 투자 비용의 요구에 응할 수 없고 해외 특허 출원비도 국내 특허가 등록된 후 실제로 해외에서 등록되는 국가별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에 응할 수 없으며, 2008. 7. 30. 무리한 자금 지원 요구에 응할 수 없고 피고 D을 인수하는 등 이미 투자한 자금을 보상하여 달라는 취지로 각각 회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E은 다시 '디티에스 월드, 대표자 F'의 명의로 2008. 8. 22. 피고 D에 피고 D, C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금형제작비, 해외 특허 출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E, F이 단독으로 이 사건 제품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은 무의미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원고의 상표권

1) 원고의 모(母) F은 아래와 같이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마쳤다(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9. 2. 5./2009. 12. 29./제810234호

나) 구성 : **D T S**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의료기계기구, 소독기구, 스텐트, 온구치료

기, 외과 및 의사용기구케이스, 외과용 가위, 외과용 거울, 외과용 기기, 외과용 메스, 외과용 전기메스, 외과용 절단기, 외과용 칼, 외과용 칼붙이, 외과용 클립, 외과용 톱, 의료기기, 의료용 바늘, 의료용 절단기, 의료용 절삭기, 의료용 주사기, 의료용 주사침, 의료용 집게[의료용 핀셋], 의료용 칼, 의료용 탐침, 주사침, 주사통, 주입주사기, 티눈용 칼, 피부성형기구, 피하주사기, 의료용 장갑, 마사지용 장갑, 의료용 마스크, 의료종사자용 마스크, 미세침이 부착된 의료용 롤러(롤러 위의 미세침이 피부 각질층을 관통하는 통로를 만들어 국소 도포크림의 유효성분 침투력을 향상시키고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의료기구임)

2) 그 후 F은 2011.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쳤다.

3) 한편 피고 D, C는 2010. 7. 2. E과 F을 상대로 E과 F이 2008년 7월 무렵부터 피고 D, C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의무 이외에 과도한 금원 지급을 요구하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E과 F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이 해제로 종료되어 피고 D이 금형제작비 등으로 2007년 12월 무렵부터 2009. 4. 30.까지 합계 150,146,290원을 지출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E과 F은 그 소송에서 피고 C가 이 사건 제품 개발에 관한 투자를 회피하고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정보만을 취득하여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이 사건 제품 개발 비용 등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8065호(본소), 2011가합790호(반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8. 18. 피고 D, C의 E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C의 F에 대한 본소 청구는 각 일부 인용하고, 피고 D의 F에 대한 본소 청구 및 E과 F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그 후 피고 D, C가 그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2. 9. 5. 제1심판결 중 피고 D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 "E, F은 연대하여 피고 D에 105,102,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4.부터 2012. 9.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1나91137호(본소), 2011나91144호(반소)], E, F이 이에 불복하여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3. 1. 24.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대법원 2012다92562호) 그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5) 그 후 피고 D은 2013년 9월 무렵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 D이 F에 대하여 위와 같이 105,102,403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F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상표권의 권리이전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0. 17. 피고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4750호). 피고 D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 9. 18.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D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나2044411호),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6. 1. 14.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대법원 2015다241297호) 그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 D의 대위신청에 따라 2016. 1. 21.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원부에 원고 명의 상표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이 마쳐졌다.

6) 한편 피고 D의 위 서울고등법원 2011나9113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은 2016. 2. 11. 2016타채500999호로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압류명령을 하였다. 그 후 인천지방법원은 2016. 6. 29. 2016타채501872호로 '이 사건 상표권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하고,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유체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에 따라 매각하도록'하는 내용의 특별현금화 명령을 발령하였고, 2017. 11. 15. 열린 매각기일에 이 사건 상표권이 16,344,000원에 피고 B에 매각되었으며, 2017. 12. 4. 피고 B 앞으로 등록권자명의변경이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기본합의가 파탄된 이후 피고들의 행위

1) 피고 C의 피부자극기 관련 특허출원 및 등록

피고 C는 2008. 12. 1. '피부자극기'라는 명칭의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2009. 9. 8. 피고 D를 특허권자로 하여 등록번호 제10-0917431호로, 2008. 12. 2. '피부자극기'라는 명칭의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2009. 2. 19. 주식회사 다내글로벌을 특허권자로 하여 등록번호 제10-0885732호로, 2008. 12. 1. '각면을 구성한 침봉을 가지는 피부자극기'라는 명칭의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2009. 9. 8. 피고 D를 특허권자로 하여 등록번호 제10-0917430호로, 2008. 12. 15. '피부자극기'라는 명칭의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2009. 9. 8. 피고 D를 특허권자로 하여 등록번호 제10-0917429호로 각 특허등록을 마쳤다.

2) 피고들의 피부자극기 판매 등

가) 피고 D은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K, 이하 'G'라 한다)가 2009. 5. 13.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이후 G로부터 'D T S' 표장(별지 제1목록 기재 1 표장, 이하 '이 사건 제1사용표장'이라 한다)이 표시된 피부자극기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 C는 2009. 7. 30. 피고 B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4. 4. 17. 단순히 한글로만 표기된 피고 B의 상호를 한글 상호 옆에 '(DTS MG Co., Ltd)'를 병기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2014. 4. 18. 그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피고 B 설립 이후부터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제1사용표장을 표시한 피부자극기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H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J에게 판매하는 등 국내의 여러 거래처에 판매하였고, 이 사건 제1사용표장 외에




'DTS', 'DTS ROLLER'와 같은 표장(별지 제1목록 기재 2, 3번 표장, 이하 각 '이 사건 제2사용표장', '이 사건 제3사용표장'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사용표장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사용표장'이라 한다)을 피고 B가 판매하는 피부자극기(이하 이 사건 각 사용표장이 표시되어 판매된 피부자극기를 '이 사건 피고 제품'이라 한다)의 포장과 제품 설명서 등에 표시하여 사용하였다.

마.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등의 경과

1) 원고가 2013. 11. 4. 피고들에 대하여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 B는 2014. 4. 29.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DDS'(등록번호 : 제438417호)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4당998호)을 제기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8. 19.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 B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피고 B

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14허6469 호).

3) 특허법원은 2015. 4. 10. 이 사건 등록상표는 'Diskneedle Therapy System'의 영문 이니셜 또는 그러한 치료법이 채용된 피부자극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지정상품인 의료기계기구, 미세침이 부착된 의료용 롤러 등의 성질(품질, 용도, 사용방법 등)을 표시하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Diskneedle Therapy System'과 관련 없는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그 지정상품을 'Diskneedle Therapy System'과 관련 있는 것으로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DDS**' 및 선출원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29258호)와 호칭, 외관, 관념 면에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 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4) 피고 B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24.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대법원 2015후833호) 위 심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 B, C의 상표권침해행위의 성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C(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이 사건 각 사용표장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미세침이 부착된 의료용 롤러와 동일·유사한 피부자극기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

장한다.

[판단]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사용표장인 'D T S'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인 'D T S'는 모두 영문자 'DTS'로 구성되어 있어 외관이 동일·유사하고, 모두 '디티에스'로 호칭될 것이므로 그 호칭이 동일하다.

그리고 이 사건 제2사용표장인  및 이 사건 제3사용표장인




'**DTS ROLLER**'는 도형과 다수의 영문자로 구성된 표장인바, ① 양 표장의 중앙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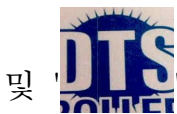
한 영문자 '**DTS**' 및 '**DTS**' 부분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고, 영문자 'DTS'는 확정된 관련 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미세침이 부착된 의료용 롤러의 성질(품질, 용도, 사용방법 등)을 표시한 기술적 표장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부자극기의 보통명칭으로 보기도 어려워 미세침이 부착된 의료용 롤러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제2사용표장 하단의 '



'부분은 작은 글자로 표기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가느다란 바늘(Diskneedle)이 원형으로 배열된 방식이 채택된 롤러라는 것을 설명하는 문구에 지나지 아니하여 식별력이 미약하여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제3사용표장 하단의 '**ROLLER**' 부분은 롤러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미약하여 보이는 점, ④ 양 표장의 우측 상단의 '**TM**' 부분은 통상적으로 등록상표임을 표시하

는 단어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미약하여 보이는 점, ⑤ 양 표장의 도형 부분인 



및 '**DTS ROLLER**'는 미세침이 부착된 롤러를 형상화한 것으로 미세침이 부착된 의료용 롤러와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3사용표

장의 경우 영문자 'DTS' 및 'DTS' 부분을 요부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제 2, 3사용표장의 요부인 'DTS' 및 'DTS'와 이 사건 등록상표인 'D T S'는 모두 영문자 'DTS'로 구성되어 있어 외관이 유사하고, 모두 '디티에스'로 호칭될 것이므로 그 호칭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각 사용표장이 동일·유사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가 이 사건 각 사용표장을 사용하여 판매한 피부자극기는 가느다란 바늘(Diskneedle)이 원형으로 배열된 롤러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미세침이 부착된 의료용 롤러(롤러 위의 미세침이 피부 각질층을 관통하는 통로를 만들어 국소 도포크림의 유효성분 침투력을 향상시키고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의료기구임)'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가 이 사건 각 사용표장을 피부자극기에 사용한 행위는 이 사건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 등은, 'DTS' 표장은 최초 피고 B의 상호로 표시되거나 피고 B 측이 가정용 전기마사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GENOSYS'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한 이후부터는 피고 B의 상호 또는 제품의 일반명칭으로 표시된 것으로서 상표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

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품과 관계, 당해 포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포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전제사실 및 갑 제25, 8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비록 이 사건 피고 제품 중 일부의 하단에 B가 2010. 3. 25.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2011. 10. 6. 상표등록을 마친 'GENOSYS' 상표(등록번호 : 제40-0883783호)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피고 제품에 표시된 이 사건 제1사용포장은 제품이 잘 보이는 전면에 분명히 인식될 정도로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DTS'는 피부자극기의 보통명칭이 아니고 식별력이 있는 포장인 점, ② 이 사건 피고 제품의 포장 및 제품 설명서에 표시된 이 사건 제2, 3사용포장은 일부 도안화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표라는 의미인 'trade mark'의 약자로서 통상적으로 등록상표임을 표시하는 'TM'이 우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용포장은 모두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 등은 다시, 피고 B 등이 판매한 피부자극기 중 침 길이가 0.25mm 미만인 제품은 미용기기로 분류되고, 실제로 이 사건 피고 제품의 수출신고필증상 'HS

CODE'(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를 말한다)도 마사지용기기에 해당하는 '9019.10-2000'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미세침이 부착된 의료용 롤러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침 길이와 관계없이 이 사건 피고 제품은 미세침으로 피부에 통로를 만들어 의약품 또는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기구로서 그 원리가 모두 동일하고, 침 길이만 다를 뿐 전체적인 형상이 모두 유사하며, 수요자가 집에서 혼자 사용하는 용도로도 제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반 수요자들은 이 사건 피고 제품의 침 길이와 관계없이 의료용으로 또는 미용을 위해 이 사건 피고 제품을 구매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피고 제품은 침 길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업체에서 생산·판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전자 상거래로도 구매할 수 있는 점, ③ 수출신고필증상 제품분류 코드는 수출업무의 편의를 위해 구분된 것이지 상품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 제품 중 피고 B 등이 주장하는 침 길이가 0.25mm 미만인 제품 역시 이 사건 지정상품 중 미세침이 부착된 의료용 롤러와 비교할 때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표를 위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

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 등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사용표장이 이 사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각 사용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인지 여부

[피고 B 등의 주장]

피고 B 등은, 이 사건 피고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각 사용표장은 피부 자극기의 보통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 상표법¹⁾ 제51조 제1항에 정해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가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효력을 제한한 것은 상품의 보통명칭은 특정 종류의 상품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표장에 관하여는 특정인이 비록 상표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

1)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된 상표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은 위 개정된 상표법 시행일인 2016. 9. 1. 이전임이 기록상 명백하여 구 상표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 B 등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하 같다.

정하여야 하며, 상표권자의 이익 및 상표에 화체되어 있는 영업상의 신용에 의한 일반 수요자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인정해야 할 만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3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TS'가 피부자극기를 의미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갑 제4호증의 3, 갑 제10호증의 1, 갑 제9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스스로도 이 사건 피고 제품과 관련하여 출원한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그 발명의 대상인 물품에 대하여 'DTS' 내지 'DTS roller'가 아닌 '피부자극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피고 제품은 피고 B의 홈페이지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약물흡수유도피부자극기'로 지칭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B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사용표장이 피고 B의 상호를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인지 여부

[피고 B 등의 주장]

피고 B 등은, 이 사건 피고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각 사용표장은 피고 B의 상호를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에 정해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상호 또는 그 상호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고 함은

그 표장을 보고 일반 수요자가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법인인 회사가 그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경우에는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일반 수요자가 반드시 상호로 인식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회사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상호의 약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약칭의 표시는 위 법규정에 따라 그것이 저명하지 않는 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41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전제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사용표장은 피고 B의 상호인 '주식회사 B' 중 회사의 형태(종류) 표시인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 것으로서 '상호의 약칭'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상호' 그 자체를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더욱이 피고 B 등은 이 사건 제2, 3사용표장을 일부 도안화하여 표시함으로써 일반의 주의를 끌 만하도록 표시하고 있다), 피고 B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용표장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사용표장이 피고 B의 '상호의 저명한 약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B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상표의 선사용 항변

[피고 B 등의 주장]

피고 B 등은, 피고 D이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이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DTS' 문구가 포함된 디자인 및 제작된 금형 등을 이용하여 피부자극기를 생산·판매하였고, 그 결과 'DTS' 표장은 일반 수요자 사이에 피고 D의 피부자극기를 표시하는 것

으로 인식되었으므로, 피고 D으로부터 'DTS' 표장 사용을 허락받은 피고 B가 상표의 선사용권자로서 이 사건 각 사용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어떠한 상표를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고,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다면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구 상표법 제57조의3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전제사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이 2007. 12. 10. 피고 C와 이 사건 기본합의를 하면서 피고 C가 'Diskneedle Therapy System' 방식이 채용된 피부자극기를 독점적으로 판매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출원일(2009. 2. 5.) 이전인 2008. 6. 16. 및 2008. 7. 14. 무렵 E과 피고 C가 피고 D이 판매할 피부자극기의 스위치 부분에 'DTS'를 표시하기로 협의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본 합의는 E과 피고 C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출원일 이전인 2008년 8월 무렵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 D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출원일 이후로서 G가 2009. 5. 13.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이후부터 G로부터 이 사건 제1사용표장이 표시된 피부자극기를 납품받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D과 법인격이 다르고 이 사

건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출원일 이후에 설립된 피고 B가 피부자극기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피고 B 등이 주장하는 'DTS' 표장을 사용하여 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 B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 또는 피고 B가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피고 B 등이 주장하는 'DTS' 표장을 사용하여 왔고, 피고 D 또는 피고 B의 위 표장 사용의 결과 위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 사이에 피고 D 또는 피고 B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B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 사건 각 사용표장을 표시한 이 사건 피고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광고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 C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 받은 2011. 7. 28.부터 2016. 6. 30.까지 상표권침해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피고 B 등의 반론]

피고 B 등은,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일 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동일 또는 유사표장 사용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다툰다.

[판단]

1) 갑 제3, 12, 18 내지 22, 103, 104, 105, 108 내지 116, 121, 1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7. 28. 미용용품, 의료용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디티에스롤러스(이하 '디티에스롤러스'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디티에스롤러스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디티에스롤러스는 원고에게 그 대가로 고정사용료(2013년까지는 연간 10,000,000원, 2014년부터는 연간 30,000,000원) 및 연간 매출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또한 디티에스롤러스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생산·판매하는 상품이 원고가 정하고 승인한 자재 및 공정의 품질수준에 부합할 것을 보장하고 그러한 상품에만 계약조항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기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표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디티에스롤러스는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피부자극기를 판매하고, 신문, 인터넷 등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 원고 측에게 상표사용료를 지급해왔다.

2) 구 상표법 제67조에 의하면,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증명책임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권리침해의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위 규정

이 상표권의 침해 사실만으로 손해의 발생에 대한 법률상의 추정을 하거나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침해자는 상표권자에게 손해의 발생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상표권은 특허권 등과 달리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영업 등에 실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등 구체적 피해 발생이 전제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등록만 해 두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등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을 침해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가 F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받은 2011. 7. 28. 이후 원고가 주장하는 상표권침해기간 동안 직접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해당하는 미세침이 부착된 의료용 롤러 제조·판매 영업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상표권자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상표를 자신의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자와 상표의 사용자가 일치하지만, 상표권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이나 동의하에 제3자가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인 원고와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한 디티에스롤러스에 의하여 원고의 통제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권을 설정하고 상표사용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어 왔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를 두고 등록만 된 채 실제 사용되지 않은 이른

바 저장상표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와 같이 실제 영업에 사용됨으로써 그 상표로서의 가치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한 수요 또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을 설정, 등록하면 전용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독점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상표권자도 그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표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용사용권자에게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상표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 참조),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에서 원고가 제3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은 원고가 디티에스 롤러스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B의 대표이사 피고 C의 상표권침해기간 중에 제3자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의 대표이사 피고 C의 상표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 허락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후

240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이유로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상표권이전등록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B 등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상표권자의 지위를 소급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적어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상표권의 이전등록이 말소된 2016. 1. 21. 이전까지는 원고가 피고 B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상표권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나, 이 사건 상표권의 이전등록이 말소된 2016. 1. 21.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 B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상표권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한편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1666 판결 참조), 2011. 7. 28.부터 2016. 1. 20.까지의 상표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인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가 피고 B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는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1. 7. 28.부터 2016. 1. 20.까지의 상표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 B 등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의 이 사건 피고 제품에 대한 국내 매출액의 약 50%가 J이 운영하는 H 측에 대한 매출액이므로 피고 B가 주장하고 있는 2011. 7. 28.부터 2014. 6. 30.까지의 국내 매출액 약 360,00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180,000,000원 정도가 H 측에 대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2010년 7월 무렵부터 2016년 6월 무렵까지 피고 B의 H 측에 대한 매출액은 730,092,000원 내지 1,440,000,000원으로서 피고 B가 실제 매출액의 1/4 내지 1/8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과세관청에 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의 위 침해기간 동안의 실제 이 사건 피고 제품에 대한 국내 매출액은 1,440,000,000원(= 360,000,000원×4) 내지 2,880,000,000원(= 360,000,000원×8)에 이르고, 여기에 같은 기간 동안의 해외 매출액 약 2,600,000,000원을 더하면 피고 B의 총 매출액은 최소 4,040,000,000원(= 1,440,000,000원 + 2,600,000,000원)에서 5,480,000,000원(= 2,880,000,000원 + 2,600,000,000원)에 이르는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총 매출액에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12%를 곱한 484,800,000원(= 4,040,000,000원×0.12) 내지 657,600,000원(= 5,480,000,000원×0.12)이므로, 그중 일부인 30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② 피고 B는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H 측에 이 사건 피고 제품을 최소 20,000원에 총 11,419개[= 3,190개(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의 판매량)²⁾ + 6,227개(2015년도 판매량) + 2,002개(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의 판매량)]를 판매하였는바, 이에 따라 위 기간 동안

2) 원고가, 피고 B가 2014년에 H 측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피부자극기 6,380개의 6/12에 해당하는 개수이다.

원고가 입은 손해는 적어도 그 매출액 228,380,000원(= 11,419개×20,000원)에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율 12%를 곱한 27,405,600원(= 228,000,000원×0.12)이므로, 그중 일부인 2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1)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 의하면, 상표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상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의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예컨대,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판매에 대한 매출액을 토대로 산정되는 통상사용권의 사용료 상당액 등을 들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디티에스롤러스와 사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상표사용료를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상표사용료를 지급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1, 13, 71, 72, 8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서울세관장이 회신한 수출통관내역에는 중복 기재되어 있는 물품이 존재하고, 이 사건 피고 제품 이외에도 화장품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가 피부자극기에 이 사건 각 사용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문자 상표 등만을 부착하여 수출한 제품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1심법원의 과세자료제출명령에 대하여 성동세무서에서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만으로는 피고 B의 총 매출액에서 이 사건 피고 제품에 관한 매출액을 구별할 수 없는 점, ③ 더욱이 피고 B

의 매출액이 기재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과 표준손익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피고 B의 정확한 매출액을 산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거나 추정하기는 어렵다.

2) 한편 법원은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 상표법 제67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구 상표법 제67조 제5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정과 아울러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피고 B 등에게 편중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사용표장의 사용이 피고 B의 매출액 또는 이익증가에 기여한 비율 등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나머지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극히 곤란하므로, 구 상표법 제67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13, 23, 24, 25, 46, 49, 51, 53, 67, 71, 75, 77, 78, 80, 82, 83, 85, 88, 90, 91, 94, 96, 102, 103호증, 갑 제122호증의 1, 을 제12, 19 내지 30, 35 내지 38, 46 내지 49, 56, 57, 58, 74 내지 79, 85 내지 100, 102 내지 106, 108 내지 111, 113 내지 116, 122 내지 128, 129 내지 137, 13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H 대표 J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아울러 피고 B의 대표이사 피고

C가 이 사건 각 사용표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피고 제품을 판매한 기간 및 태양 등 그 밖에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2011. 7. 28.부터 2016. 1. 20.까지의 상표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81,000,000원[= 80,000,000원(2011. 7. 28.부터 2014. 6. 30.까지의 손해액) + 1,000,000원(2014. 7. 1.부터 2016. 1. 20.까지의 손해액)] 정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가) 피고 B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2011. 8. 1.부터 2014. 6. 30.까지의 매출액은 합계 6,707,077,793원[= 821,363,840원(2011. 8. 1.부터 2011. 12. 31.까지의 매출액)³⁾ + 1,219,611,191원(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의 매출액) + 899,890,853원(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의 매출액) + 1,228,796,070원(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의 매출액) + 1,244,662,596원(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의 매출액) + 1,292,753,243원(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의 매출액)]이나, 피고 B가 피부자극기뿐만 아니라 화장품 등 다른 상품도 판매함에 따라 피고 B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매출액에는 화장품 등 다른 상품에 대한 매출액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매출액 전부를 이 사건 피고 제품을 포함한 피부자극기의 매출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한편 ① 피고 B는 피부자극기에 대한 매출순위에 따라 매입처별로 출고수량, 출고금액, 점유율을 전산으로 관리하면서 매년 매출순위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피고 B가 H 측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피고 제품의 판매수량 중 일부[2013년도 판매수량 6,223개, 2014년도 판매수량 6,102개, 2015년도 판매수량 2,579개, 2016년도 판매수량 1,122개(2018. 10. 31.자 준비서면 등 참조)]는 J이

3)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의 매출액 985,636,608원 × 5개월(2011. 8. 1.부터 2011. 12. 31.까지)/6개월(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 821,363,840원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2013년 3월 이후의 피부자극기 판매수량[2013년도 판매수량 2,248개(별지 제2목록 제1항 참조), 2014년도 판매수량 2,225개(별지 제2목록 제2항 참조), 2015년도 판매수량 1,314개(별지 제2목록 제3항 참조), 2016년도 판매수량 622개(별지 제2목록 제4항 참조)]과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점(비록 J은 위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고 B가 자신에게 공급한 제품 수량은 원고가 주장하는 제품 수량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나, J은 2013년 이후의 피고 B와의 거래명세서만을 보관하고 있고, 피고 B가 H 측에 공급한 모든 수량에 대해서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도 회신한 점에 비추어 이 부분 사실조회 결과는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이 사건 피고 제품 판매 수량 전부를 J이 피고 B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가 2011. 8. 1.부터 2014. 6. 30.까지 이 사건 피고 제품을 포함하여 국내에 판매한 피부자극기의 국내 매출액은 같은 기간 동안의 피고 B의 피부자극기에 대한 매출순위표 기재 매출액의 합계인 360,782,236원[= 57,086,553원(2011. 8. 1.부터 2011. 12. 31.까지의 매출액)⁴⁾ + 104,519,556원(2012년도 매출액, 을 제47호증의 1 참조) + 98,303,874원(2013년도 매출액, 을 제48호증의 1 참조) + 100,872,253원(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의 매출액, 을 제49호증의 1 참조)]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피고 B가 H 측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피부자극기가 포

4) 190,288,510원[= 28,304,995원(2011년 8월 국내 매출액) + 48,172,047원(2011년 9월 국내 매출액) + 41,284,681원(2011년 10월 국내 매출액) + 44,993,089원(2011년 11월 국내 매출액) + 27,533,698원(2011년 12월 국내 매출액), 을 제85호증 참조] × 30%[2012년도 피부자극기 국내 매출액 104,519,566원은 총 국내 매출액 364,679,840원(= 363,043,477원 + 1,636,363원, 갑 제72호증의 5면)의 약 28%(= 104,519,566원/364,679,840원), 2013년도 피부자극기 국내 매출액 98,303,874원은 총 국내 매출액 361,958,916원(= 360,120,916원 + 1,838,000원, 갑 제72호증 8면)의 약 27%(= 98,303,874원/361,958,916원)인 점 등을 고려하여 2011. 8.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국내 매출액 중 피부자극기가 차지하는 비율을 30%로 산정] = 57,086,553원

함된 KIT 상품의 판매수량은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153개, 2011년 6,411개, 2012년 673개, 2013년 1,023개, 2014년 278개, 2015년 3,648개,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880개로서 총 13,066개이므로, 그에 대한 매출액도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J이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고 B가 자신에게 공급한 제품 수량은 원고가 주장하는 제품 수량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J은 2013년 이후의 피고 B와의 거래명세서만을 보관하고 있고, 피고 B가 자신에게 공급한 모든 수량에 대해서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도 회신한 점에 비추어 이 부분 사실조회 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더러,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피부자극기가 포함된 KIT 상품 판매수량은 J이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2013년 3월 이후의 피부자극기가 포함된 KIT 상품 판매수량[2013년 530개(별지 제3목록 제1항 참조), 2014년 65개(별지 제3목록 제2항 참조), 2015년 251개(별지 제3목록 제3항 참조),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190개(별지 제3목록 제4항 참조)]과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피부자극기가 포함된 KIT 상품 판매수량 전부를 H 측이 피고 B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 다만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B는 H 측에 피부자극기가 포함된 KIT 상품도 판매하였고⁵⁾, KIT 상품에 포함된 피부자극기에 피고 B가 H 측에 별도로 납품한 피부자극기와 다른 포장에 사용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B가 2013년 3월 무렵부터

5) 이 법원의 J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J이 이 법원에 회신한 사실조회회신서에 첨부된 H 측의 피고 B와의 거래명세서에는 위 KIT 상품의 단가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부자극기 외에 '세럼' 등도 포함된 KIT 상품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위 KIT 상품에 포함된 피부자극기의 매출액을 별도로 산정하기 어려운바, 원고가 이 법원에서 J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피고 B와 J 사이의 2010. 7. 1.자 'GENOSYS D.T.S. 국내 미용시장 총판권 계약서'에 바다, 얼굴용 피부자극기(수동) 기본형의 단가가 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KIT 상품에 포함된 피부자극기의 매출액을 산정하였다.

2014. 6. 30.까지 H 측에 판매한 KIT 상품에 포함된 피부자극기의 매출액인 11,000,000 원[= 2013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매출액 10,600,000원(별지 제3목록 제1항 참조) +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의 매출액 400,000원(별지 제3목록 제2항 참조)]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KIT 상품에 포함된 피부자극기를 포함한 피고 B의 2011. 8. 1. 부터 2014. 6. 30.까지의 피부자극기의 국내 매출액은 371,782,236원(= 360,782,236원 + 11,000,000원) 정도로 산정된다.

다) 한편 2014. 7. 1.부터 2016. 1. 20.까지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B의 H 측에 대한 매출액은 KIT 상품에 포함된 피부자극기를 포함하여 합계 49,854,000원[= 43,534,000원(=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의 피부자극기 매출액 14,150,000원 + 2015년도 피부자극기 매출액 28,334,000원 + 2016. 1. 1.부터 2016. 1. 20.까지의 피부자극기 매출액 1,050,000원, 을 제100호증의 2 참조) + 900,000원(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의 KIT 상품에 포함된 피부자극기 매출액, 별지 제3목록 제2항 참조) + 5,020,000원(2015년도 KIT 상품에 포함된 피부자극기 매출액, 별지 제3목록 제3항 참조) + 400,000원(2016. 1. 1.부터 2016. 1. 20.까지의 KIT 상품에 포함된 피부자극기 매출액, 별지 제3목록 제4항 참조)]인 것으로 보이는바, 2014. 9. 1. 무렵 피고 B의 창고에 이 사건 피고 제품 53개와 그 포장지 1,315개가 보관되어 있었으며, 피고 B는 2015. 8. 2. 무렵에도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제1사용포장과 동일성이 있는 'DTS' 포장을 표시하였고, 피고 B는 H 측에 2016년 6월 무렵까지 피부자극기를 공급하였는데 피고 B가 H 측에게 공급하고 H 측이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2015년 3월 무렵 생산한 피부자극기의 제품 포장에도 이 사건 제2사용포장이 표시되

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사용 금지가처분 사건의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3라1759) 계속 중인 2014. 4. 25. "피고들이 미세침이 부착된 의료용 롤러 또는 약물흡수유도 피부자극기 및 그에 관한 상품포장 용기와 광고 선전물에 'DTS' 상표 및 이 사건 제2, 3사용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 B가 공급하여 H 측이 판매한 피부자극기로서 2016년 3월 및 2016년 4월 무렵 생산된 피부자극기 및 그 포장에는 이 사건 각 사용포장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침해기간 전부에 걸쳐 피고 B가 H 측에 판매한 피부자극기에 이 사건 각 사용포장이 표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등은 2014. 5. 30. 무렵 의료기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부자극기를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료기기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을 받아, H 측이 보관 중이던 피부자극기 등을 전량 회수하여 폐기하였고, 2014년 11월 무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료기기 판매중지명령 해지 통보를 받았으므로, 2014년 5월 무렵부터는 피부자극기에 이 사건 각 사용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비록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14. 5. 30. 피고 B에 대하여 의료기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기기인 약물흡수유도피부자극기를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1. 4. 25.부터 2014. 5. 28.까지 제조·판매한 의료기기에 대한 판매중지·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등 명령을 하였고, 다시 2014. 7. 16. 의료기기인 약물흡수유도피부자극기에 대한 3개월(2014. 7. 30.부터 2014. 10. 29.까지)의 제조업무정지 및 1개월 7일(2014. 7. 30.부터 2014. 9. 5.

까지)의 판매업무정지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B가 2014. 8. 22. 해당 약물흡수유도 피부자극기를 폐기하였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14. 11. 3. 피고 B에 대하여 위 의료기기 판매중지명령을 해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위 행정처분과 관련된 피부자극기는 의료기기용 피부자극기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 B가 판매한 칩 길이가 0.25mm 미만인 미용기기용 피부자극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B가 H 측 등으로부터 회수하여 2014. 8. 22. 폐기한 피부자극기는 피고 B가 판매한 의료기기용 피부자극기 전부가 아닌 156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위 행정처분에 따라 피부자극기를 폐기한 이후인 2014. 9. 1. 무렵에도 피고 B의 창고에서 이 사건 피고 제품 53개와 그 포장지 1,315개가 발견되었고, 피고 B가 H 측에게 공급하고 H 측이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2015년 3월 무렵 생산된 피부자극기의 제품 포장에도 이 사건 제2사용표장이 표시되어 있었던 점, ④ 더욱이 H 측이 2016. 10. 14. 피고 B에 '제노시스제품의 반품요청 건 내용증명에 대한 4차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내용증명에는 H 측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사용표장이 표시된 피부자극기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 피고 B가 H 측이 보관 중이던 이 사건 각 사용표장이 사용된 피부자극기를 전량 회수하여 폐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의 수출통관내역에 따라 이 사건 피고 제품의 2011 8. 1.부터 2014. 4. 30.까지의 해외 매출액을 합계 20,016,295,593원으로도 주장하였으나(갑 제11호증, 2015. 8. 17.자 준비서면 참조), ① 서울세관장이 통보한 수출통관내역에는 동일한 수출통관내역이 중복하여 기재된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고 B가 2013. 10. 16. 'CHANG SHA MING YI'에게 'MEDICAL ROLLER' 210개를 수

출하면서 그 판매가격 5,304,810원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출통관내역에는 피고 B가 수출신고한 판매가격을 미화로 오인하여 이를 원화로 환산한 5,636,508,388 원이 판매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또한 위 수출통관내역에는 피부자극기 외에 피고 B가 수출한 'CO2 MASK SHEET, CO2 MASK JAR, PEPTIDE GEL MASK PACK, GENOSYS PCS SOLUTION, SWS WHITENING SERUM, SWS WHITENING SOLUTION, SRS PEELING SOLUTION' 등 화장품 관련 수출내역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④ 더욱이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장이 발행한 수출실적확인서(을 제20호증)에 의하면 2011. 8. 1.부터 2014. 6. 30.까지의 피고 B의 수출실적은 총 미화 4,898,289 달러[= 미화 577,579 달러(= 미화 141,694 달러(2011년 8월 수출액) + 미화 87,268 달러(2011년 9월 수출액) + 미화 56,143 달러(2011년 10월 수출액) + 미화 99,334 달러(2011년 11월 수출액) + 미화 193,140 달러(2011년 12월 수출액)) + 미화 1,535,466 달러(2012년의 수출액) + 1,816,295 달러(2013년 수출액) + 미화 968,949 달러(= 미화 165,648 달러(2014년 1월 수출액) + 미화 150,834 달러(2014년 2월 수출액) + 미화 166,961 달러(2014년 3월 수출액) + 미화 244,281 달러(2014년 4월 수출액) + 미화 115,780 달러(2014년 5월 수출액) + 미화 125,445 달러(2014년 6월 수출액))]로서 약 49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이 사건 피고 제품 해외 매출액 전부를 이 사건 피고 제품을 포함한 피부자극기의 해외 매출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반면에 피고 B는 서울세관장이 통보한 수출통관내역을 기초로 2011. 8. 1.부터 2014.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피고 제품을 포함하여 피고 B가 수출한 피부자극기의 해외 매출액이 2,601,459,663원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① 피고 B는

위 수출통관내역 중 중복 기재된 수출품과 피부자극기 이외의 수출품을 제외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수출금액 계산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정리하여 이 사건 피고 제품을 포함한 피부자극기에 대한 해외 수출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B의 해외 수출액 정산자료(을 제21호증)와 피고 B의 수출신고필증(갑 제83호증)을 대비하면 중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자인하는 이 사건 피고 제품을 포함한 피부자극기에 대한 해외 매출액은 신빙할 수 있어 보이고, 달리 피고 B가 위와 같이 자인한 금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피고 제품을 포함한 피부자극기를 수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마) 한편 피고 B 등은 피고 B가 판매한 피부자극기의 해외 매출액 중 'GENOSYS' 상표와 같은 자체 상표를 부착한 상품에 대한 매출액 819,940,810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비록 피고 B가 2010. 3. 25.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GENOSYS'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2011. 10. 6. 상표등록(등록번호 : 제40-0883783호)을 마쳤고, 2010. 3. 25. '네일에나멜리무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GENOSYS'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2012. 10. 18. 상표등록(등록번호 : 제40-0937944호)을 마친 것은 사실이나, ① 피고 B 등은 피고 B가 설립된 이후 피부자극기의 하단에 위 'GENOSYS' 상표를 표시하고 피부자극기 상단에는 이 사건 제1사용표장과 동일한 'DTS' 표장을 사용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이 사건 각 사용표장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또는 피고 B의 상호를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실제로 피고 B가 판매하고 수출한 피부자극기의 포장 또는 제품 설명서에 위 'GENOSYS' 상표와 이 사건 각 사용표장이 함께 사용되기도 한 점, ② 피고 B가 H를 운영하는 J을 상대로 제기한 화장품 및 미용기기 독점공급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8234(본소), 2017가합102370(반소)]의 당사자신문과정에서 피고 C가 계약 초기인 2013년에도 'DTS'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H 측에 공급하였고, 2015년에도 'DTS' 상표와 위 'GENOSYS' 상표가 함께 사용된 제품을 공급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 등이 주장하는 위 'GENOSYS' 상표가 사용된 피부자극기에도 이 사건 각 사용표장이 다수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 등이 'GENOSYS' 상표와 같은 자체 상표를 부착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품에 대한 매출액의 상당 부분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 또한 피고 B 등은, 피고 B의 해외 매출액 중 2011. 8. 1.부터 2014. 6. 30.까지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용표장이 아닌 주문자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한 피부자극기의 매출액 915,615,098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관세법 제241조 제1항⁶⁾ 및 동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4호⁷⁾에 의하면, '상표'는 세관 신고 시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6)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관세법시행령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법 제2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상표

의하면 상표가 없는 경우 'NO'라고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B 등이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피부자극기와 관련하여 수출신고필증의 '상표명'란에 피고 B 등이 주문자 상표라 주장하는 상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채 오히려 'DTS'로 기재되어 있고, 다수의 수출신고필증에는 '상표명'란이 공란인 반면 품명 내지 거래품명에는 'DTS ROLLER'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반면에 ① 피고 B가 위 상표권침해기간 중에 수출한 일부 피부자극기의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의 '상품(Product)'란에 'OEM'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B가 유럽에 의료기기용 피부자극기를 수출하기 위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CE⁸⁾ 인증서(을 제102호증)와 관련한 기술문서에는 'Filorga', 'SRS', 'Mesoline' 등의 주문자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점, ③ 비록 2011. 11. 9. 최초 발행되어 그 후 2015. 4. 23.까지 순차로 갱신된 것으로 보이는 위 CE 인증서 자체에 주문자 상표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CE 인증서에는 상표명을 기재하지 않고, 특정 모델이나 상표명만이 CE 인증을 받은 경우나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CE 인증서에 상표명을 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위 CE 인증서에 주문자 상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B가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피부자극기를 수출한 적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실제로 인터넷 검색사이트 구글 등에서 피고 B가 수출한 제품으로서 주문자 상표만 표시된 피부자극기가 검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표권침해기간 동안 피고 B가 수출한 피부자극기 중 일부에는 주문자 상표가 표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 체결 당시 상표사용권자인 디티에스롤러스가 상표권자인 원고에게 2013년까지는 연간 1,000만 원, 2014년부터

8) 유럽 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가 자신의 제품이 해당 EU지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 또는 해당 통지기관(인증기관, Notified Body)의 적합성평가방법을 거쳤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강제 규격이다 (을 제111호증 참조).

는 연간 3,000만 원의 기본사용료 및 디티에스롤러스의 매출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① 원고는 상표사용권자인 디티에스롤러스의 주주이자, 디티에스롤러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F, E의 딸로서 계약당사자간에 특수한 관계가 있어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의 내용을 일반거래상의 상표사용료를 산정하는 자료로 삼기 어려운 점, ② 오히려 제1심 감정인 I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로열티율을 매출액의 3%로 감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감정 결과가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경매절차에 이 사건 상표권을 16,344,000원에 경락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에 따른 상표사용료를 기초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아) 피고 B의 2011. 7. 28.부터 2014. 6. 30.까지의 피부자극기 매출액으로서 앞서 본 피고 B의 국내 매출액과 해외 매출액, KIT 상품에 포함되어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피부자극기 매출액 및 제1심 감정인 I이 감정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로열티율을 기초로 산정한 상표사용료는 89,197,256원[= 2,973,241,899원(= 국내 피부자극기 매출액(KIT 상품에 포함된 피부자극기의 매출액 포함) 371,782,236원 + 해외 매출액 2,601,459,663원) × 0.03]이다. 또한 피고 B의 2014. 7. 1.부터 2016. 1. 20.까지의 피부자극기 매출액으로서 앞서 본 피고 B의 피부자극기 매출액(KIT 상품에 포함된 피부자극기의 매출액 포함)과 제1심 감정인 I이 감정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로열티율을 기초로 산정한 상표사용료는 1,495,620원[= 49,854,000원 × 0.03]이다.

자)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는 2008년 12월 무렵 독자적으로 피부자극기를 발명하여 피고 D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등록을 마쳤고, 피고 B는 이 사건 피고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위 특허발명을 실시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해외 전시회 및 세미나를 꾸준히 개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외에도 위와 같은 특허발명의 실시나 해외 전시회 개최 등의 사정도 이 사건 피고 제품의 매출액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상표권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1,000,000원(= 2011. 7. 28.부터 2014. 6. 30.까지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금 80,000,000원 + 2014. 7. 1.부터 2016. 1. 20.까지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금 1,000,000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80,000,000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7. 1.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8. 10. 31.자) 부분이 피고 B, C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0. 3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1,000,000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7. 1.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9. 2. 2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D의 대표이사인 피고 C가 2011. 7. 28.부터 2016. 6. 30.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이 사건 각 사용표장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미세 침이 부착된 의료용 롤러와 동일·유사한 피부자극기에 사용하거나 피고 B의 상표권침해행위에 공동으로 관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D은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D의 반론]

피고 D은, 원고 주장의 상표권침해기간 동안 피부자극기를 제조·판매한 적이 없고, 피고 B의 피부자극기 판매에 관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다룬다.

[판단]

앞서 본 전제 사실 및 갑 제14호증, 갑 제71호증의 2, 을 제59, 60, 61, 6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하기 전에 피고 D 명의로 피부자극기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전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9, 62 내지 68, 70 내지 73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피고 C는 2009. 7. 30. 피고 B를 설립한 이후부터는 주로 피고 B 명의로 피부자극기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D의 2010. 1. 1.부터 2014. 4. 30.까지 해외수출액은 6,793,588원 정도에 불과하고(원고의 2014. 8. 26.자 준비서면 참조), 2011. 8. 1.부터 2014. 6. 30.까지는 피고 D이 피부자극기를 수출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피고 D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2011년 이후에는 피고 D은 피고 B에 대한 특허사용료의 매출만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F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받은 2011. 7. 28.부터 2016. 1. 20.까지 피고 C가 피고 D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사용표장을 사

용한 피부자극기를 생산·판매하는 등으로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거나, 피고 D이 피고 B의 상표권침해행위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 D이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손해배상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 피고 B, C에 대하여 감축되거나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부분(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도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서승렬

 판사 정운형

 판사 김동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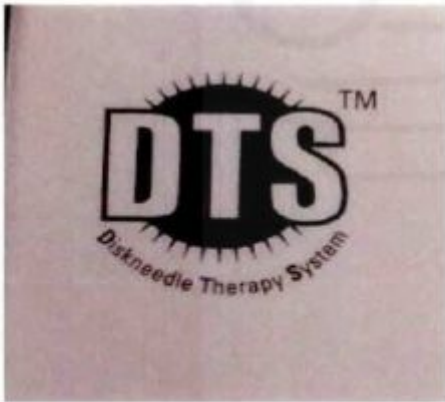
별지

제1목록

1. 포장

D T S

2. 포장



3. 포장



끝.

별지

제2목록

1. 2013년도 피부자극기 매출내역

일시(2013년)	품목	규격(mm)	수량(개)	단가(원)	공급가액(원) ⁹⁾
3. 5.	RW050SR	0.5	10	19,090.90	190,909
3. 5.	RWH025SR	0.25	100	18,181.81	1,818,181
3. 5.	RW025SR	0.25	50	19,090.90	954,545
3. 7.	M050SRBL	0.5	20	13,636.36	272,727
3. 7.	M025NRBL	0.25	30	13,636.36	409,090
3. 7.	M050NRBL	0.5	30	13,636.36	409,090
3. 7.	FB050NR	0.5	15	15,454.54	231,818
3. 11.	RWH100SR	1	15	18,181.81	272,727
4. 8.	RWH025SR	0.25	100	18,181.81	1,818,181
4. 8.	RWH050SR	0.5	30	18,181.81	545,454
4. 10.	RWH100SR	1	10	18,181.81	181,818
4. 26.	ST100SBL	1	10	9,090.90	90,909
5. 6.	RWH150SR	1.5	10	18,181.81	181,818
5. 9.	RWH025SR	0.25	100	18,181.81	1,818,181
5. 9.	E025SBL	0.25	50	4,090.90	204,545
5. 21.	RW025SR	0.25	50	19,090.90	954,545
6. 18.	RWH050SR	0.5	20	18,181.81	363,636
7. 1.	RWH025SR	0.25	50	18,181.81	909,090
8. 9.	RWH025SR	0.25	80	18,181.81	1,454,545
8. 26.	RWH200SR	2	15	18,181.81	272,727
8. 26.	FB150SR	1.5	10	15,454.54	154,545
8. 26.	E025SBL	0.25	50	4,090.90	204,545
8. 26.	M025SRBL	0.25	30	15,454.54	463,636
9. 2.	FB200SR	2	30	15,454.54	463,636
9. 5.	RW050SR	0.5	3	19,090.90	57,272
9. 11.	RWH025SR	0.25	50	18,181.81	909,090
10. 7.	RW100SR	1	1	19,090.90	19,090
10. 7.	RWH100SR	1	2	18,181.81	36,363
10. 10.	FB025SR	0.25	900	15,454.54	13,909,090
10. 10.	RWH150SR	1.5	2	18,181.81	36,363
10. 11.	RWH025SR	0.25	50	18,181.81	909,090
10. 11.	E025TBL	0.25	25	8,181.81	204,545
10. 16.	RW100SR	1	5	19,090.90	95,454
10. 16.	RWH100SR	1	5	18,181.81	90,909
10. 16.	ST100SBL	1	10	9,090.90	90,909
11. 4.	RW150SR	1.5	50	19,090.90	954,545

11. 4.	RWH150SR	1.5	50	18,181.81	909,090
11. 4.	RWH050SR	0.5	30	18,181.81	545,454
11. 4.	E025TBL	0.25	50	8,181.81	409,090
11. 4.	ST050SBL	0.5	5	9,090.90	45,454
11. 7.	ST100SBL	1	30	9,090.90	272,727
11. 18.	RWH150SR	1.5	15	18,181.81	272,727
12. 2.	RWH025SR	0.25	50	18,181.81	909,090
합계			2,248		35,317,250

2. 2014년도 피부자극기 매출내역

일시(2014년)	품목	규격(mm)	수량(개)	단가(원)	공급가액(원)
1. 2.	E025TBL	0.25	30	8,181.81	245,454
1. 2.	RWH025SR	0.25	50	18,181.81	909,090
1. 9.	RWH025NR	0.25	30	15,454.54	463,636
2. 5.	RWH050SR	0.5	30	18,181.81	545,454
2. 5.	RWH150SR	1.5	6	18,181.81	109,090
2. 5.	E025TBL	0.25	30	8,181.81	245,454
2. 19.	RWH025SR	0.25	50	18,181.81	909,090
2. 19.	M050SRBL	0.5	30	13,636.36	409,090
2. 19.	M100SRBL	1	1	13,636.36	13,636
2. 19.	M200SRBL	2	1	13,636.36	13,636
2. 24.	RWH100SR	1	10	18,181.81	181,818
3. 5.	M150SRBL	1.5	6	13,636.36	81,818
3. 5.	M200SRBL	2	4	13,636.36	54,545
3. 11.	RWH025SR	0.25	100	18,181.81	1,818,181
3. 11.	E025TBL	0.25	50	8,181.81	409,090
3. 25.	RWH025SR	0.25	50	18,181.81	909,090
4. 2.	RWH050SR	0.5	20	18,181.81	363,636
4. 8.	M025SRBL	0.25	10	13,636.36	136,363
4. 8.	FB050SR	0.5	2	15,454.54	30,909
4. 8.	FB100SR	1	1	15,454.54	15,454
4. 10.	RWH025SR	0.25	50	18,181.81	909,090
4. 11.	M025SRBL	0.25	30	13,636.36	409,090
4. 11.	E025TBL	0.25	50	8,181.81	409,090
4. 17.	RWH025SR	0.25	50	18,181.81	909,090
5. 2.	RW025SR	0.25	50	19,090.90	954,545
5. 2.	RWH025SR	0.25	50	18,181.81	909,090
5. 2.	RWH025NR	0.25	11	15,454.54	170,000
5. 2.	RWH150SR	1.5	15	18,181.81	272,727

9)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5. 2.	ST100SBL	1	20	9,090.90	181,818
5. 6.	M100SRBL	1	2	13,636.36	27,272
6. 3.	E020TBL	0.2	150	8,181.81	1,227,272
6. 3.	RWH020NR	0.2	30	15,454.54	463,636
6. 3.	RWH020SR	0.2	300	18,181.81	5,454,545
6. 3.	RW020SR	0.2	150	19,090.90	2,863,636
1. 1. ~ 6. 30. 합계			1,469		23,025,435
7. 3.	RW020SR	0.2	100	19,090.90	1,909,090
7. 16.	RWH050SR	0.5	20	18,181.81	363,636
7. 31.	M100SRBL	1	-41	13,636.36	-559,090
7. 31.	M025SRBL	0.25	-6	13,636.36	-81,818
7. 31.	M050SRBL	0.5	-27	13,636.36	-368,181
7. 31.	FB025SR	0.25	-2	15,454.54	-30,909
7. 31.	FB100SR	1	-10	15,454.54	-154,545
9. 18.	H020SR(국내)	0.2	300	18,181.81	5,454,545
9. 18.	H050SR(국내)	0.5	60	18,181.81	1,090,909
9. 18.	H100SR(국내)	1	20	18,181.81	363,636
9. 18.	E020TBL	0.2	50	8,181.81	409,090
10. 17.	RWH020NR	0.2	30	15,454.54	463,636
10. 23.	H020SR(국내)	0.2	40	18,181.81	727,272
11. 27.	H050SR(국내)	0.5	50	18,181.81	909,090
12. 16.	H020NR(국내)	0.2	50	15,454.54	772,727
12. 24.	BH020SRT(국내)	0.2	20	20,000	400,000
12. 31.	H025SR-FB(국내)	0.25	12	15,454.54	185,454
12. 31.	M025SRBK	0.25	17	13,636.36	231,818
12. 31.	M025NRBK(국내)	0.25	25	13,636.36	340,909
12. 31.	ST025W(국내)	0.25	48	9,090.90	436,363
7. 1. ~ 12. 31. 합계			756		12,863,632
2014년 합계			2,225		35,889,067

3. 2015년도 피부자극기 매출내역

일시(2015년)	품목	규격(mm)	수량(개)	단가(원)	공급가액(원)
1. 30.	H020SR(국내)	0.2	50	18,181.81	909,090
2. 11.	BH020SRT(국내)	0.2	50	20,000	1,000,000
3. 9.	H020SR(국내)	0.2	100	18,181.81	1,818,181
3. 18.	H020NR(국내)	0.2	50	15,454.54	772,727
3. 27.	BH020SRT(국내)	0.2	50	20,000	1,000,000
4. 8.	H020SR(국내)	0.2	97	18,181.81	1,763,636
4. 21.	H020SR(국내)	0.2	50	18,181.81	909,090

4. 21.	M025SRBK(국내)	0.25	10	13,636.36	136,363
4. 21.	H150SR(국내)	1.5	20	18,181.81	363,636
5. 27.	RWH025SR	0.25	7	18,181.71	127,271
6. 9.	RW(020SR)국내	0.2	60	19,090.90	1,145,454
6. 9.	H020SR(국내)	0.2	100	18,181.81	1,818,181
6. 19.	H025SR(국내)	0.25	5	18,181.81	90,909
7. 7.	BH020SRT(미용)	0.2	50	20,000	1,000,000
7. 24.	M050SRBK(국내)	0.5	22	13,636.36	300,000
8. 20.	H020SR(미용)	0.2	50	18,181.81	909,090
8. 20.	H050SR(국내)	0.5	27	18,181.81	490,909
9. 2.	M050SRBK(국내)	0.5	24	13,636.36	327,272
9. 17.	RW(020SR)미용	0.2	30	19,090.90	572,727
9. 17.	H020SR(미용)	0.2	100	18,181.81	1,818,181
10. 6.	H020SR(미용)	0.2	100	18,181.81	1,818,181
10. 6.	H050SR(국내)	0.5	30	18,181.81	545,454
11. 13.	H100SR-FB(국내)	1	1	15,454.54	15,454
11. 13.	H050SR-FB(국내)	0.5	1	15,454.54	15,454
11. 17.	RW(020SR)미용	0.2	35	19,090.90	668,181
11. 17.	H020SR(미용)	0.2	50	18,181.81	909,090
11. 19.	RW(020SR)미용	0.2	15	19,090.90	286,363
12. 9.	RW(020SR)미용	0.2	50	19,090.90	954,545
12. 9.	H020SR(미용)	0.2	50	18,181.81	909,090
12. 9.	H050SR(국내)	0.5	30	18,181.81	545,454
합계			1,314		23,939,983

4. 2016년도 피부자극기 매출내역

일시(2016년)	품목	규격(mm)	수량(개)	단가(원)	공급가액(원)
1. 7.	H020SR(미용)	0.2	50	20,000	909,090
1. 15.	ST150BK(국내)	1.5	5	9,090.90	45,454
1. 1. ~ 1. 20.			55		954,544
합계					
2. 3.	ST100BK(국내)	1	3	9,090.90	27,272
2. 25.	RW(050SR)국내	0.5	1	19,090.90	19,090
2. 25.	H020SR(미용)	0.2	100	18,181.81	1,818,181
3. 4.	E020TBL	0.2	30	8,181.81	245,454
3. 4.	H050SR-FB(국내)	0.5	1	15,454.54	15,454
3. 14.	M025SRBK(국내)	0.25	10	13,636.36	136,363
3. 14.	RW020SR(반제품)	0.2	2	19,090.90	38,181
3. 16.	H020SR(미용)	0.2	50	18,181.81	909,090
4. 5.	RW(020SR)미용	0.2	50	19,090.90	954,545
4. 5.	H050SR(국내)	0.5	15	18,181.81	272,727
4. 5.	EBT020	0.2	30	8,181.81	245,454
5. 11.	H020SR(미용)	0.2	5	18,181.81	90,909

5. 12.	H020SR(미용)	0.2	95	18,181.81	1,727,272
5. 12.	H050SR(국내)	0.5	20	18,181.81	363,636
5. 23.	H020SR(미용)	0.2	5	18,181.81	90,909
6. 2.	H020SR(미용)	0.2	10	18,181.81	181,818
6. 2.	RW(020SR)미용	0.2	30	19,090.90	572,727
6. 15.	H020SR(미용)	0.2	90	18,181.81	1,636,363
6. 15.	RW(020SR)미용	0.2	20	19,090.90	381,818
1. 21. ~ 6. 30. 합계			567		9,727,263
1. 1. ~ 6. 30. 합계			622		10,681,807

끝.

별지

제3목록

1. 2013년도 KIT 상품에 포함된 피부자극기 매출내역

일시(2013년)	품목	규격	수량(개)	피부자극기 매출액
3. 5.	AWS MESOTHERAPY HOME KIT	롤러 + 세럼	10	200,000
4. 8.	PCS MESTOTHERAPY HOME KIT	롤러 + 세럼	5	100,000
4. 19.	HR3 MATRIX KIT(FB)	롤러 + 필링	500	10,000,000
8. 9.	AWS MESOTHERAPY HOME KIT	롤러 + 세럼	5	100,000
10. 7.	AWS MESOTHERAPY HOME KIT	롤러 + 세럼	5	100,000
10. 7.	SWS MESOTHERAPY HOME KIT	롤러 + 세럼	5	100,000
합계			530	10,600,000

2. 2014년도 KIT 상품에 포함된 피부자극기 매출내역

일시(2014년)	품목	규격	수량(개)	피부자극기 매출액
4. 2.	AWS MESOTHERAPY HOME KIT	롤러 + 세럼	5	100,000
4. 11.	AWS MESOTHERAPY HOME KIT	롤러 + 세럼	5	100,000
4. 11.	SWS MESOTHERAPY HOME KIT	롤러 + 세럼	5	100,000
4. 11.	PCS MESOTHERAPY HOME KIT	롤러 + 세럼	5	100,000
1. 1. ~ 6. 30. 합계			20	400,000
12. 12.	SWS MESOTHERAPY HOME KIT	롤러 + 세럼	5	100,000
12. 12.	AWS MESOTHERAPY HOME KIT	롤러 + 세럼	5	100,000
12. 24.	SWS MESOTHERAPY HOME KIT	롤러 + 세럼	5	100,000
12. 30.	HR3 MATRIX KIT(FB)	롤러 + 필링	30	600,000
7. 1. ~ 12. 31. 합계			45	900,000
1. 1. ~ 12. 31. 합계			65	1,300,000

3. 2015년도 KIT 상품에 포함된 피부자극기 매출내역

일시(2015년)	품목	규격	수량(개)	피부자극기 매출액
1. 23.	HR3 MATRIX KIT(FB)	롤러 + 필링	30	600,000
2. 3.	HR3 MATRIX KIT(FB)	롤러 + 필링	30	600,000
3. 13.	AWS MESOTHERAPY HOME KIT	롤러 + 세럼	3	60,000
3. 13.	PCS MESOTHERAPY HOME KIT	롤러 + 세럼	3	60,000
4. 21.	HR3 MATRIX KIT(FB)	롤러 + 필링	30	600,000

6. 9.	HR3 MATRIX KIT(FB)	롤러 + 필링	30	600,000
8. 28.	HR3 MATRIX KIT(FB)	롤러 + 필링	20	400,000
9. 17.	HR3 MATRIX KIT(FB)	롤러 + 필링	20	400,000
9. 17.	AWS MESOTHERAPY HOME KIT	롤러 + 세럼	5	100,000
9. 17.	SWS MESOTHERAPY HOME KIT	롤러 + 세럼	5	100,000
9. 17.	PCS MESOTHERAPY HOME KIT	롤러 + 세럼	5	100,000
10. 6.	HR3 MATRIX KIT(FB)	롤러 + 필링	20	400,000
11. 26.	HR3 MATRIX KIT(FB)	롤러 + 필링	20	400,000
12. 17.	HR3 MATRIX KIT(FB)	롤러 + 필링	20	400,000
12. 17.	AWS MESOTHERAPY HOME KIT	롤러 + 세럼	5	100,000
12. 17.	SWS MESOTHERAPY HOME KIT	롤러 + 세럼	5	100,000
합계			251	5,020,000

4. 2016년도 KIT 상품에 포함된 피부자극기 매출내역

일시(2016년)	품목	규격	수량(개)	피부자극기 매출액
1. 20.	HR3 MATRIX KIT(FB)	롤러 + 필링	20	400,000
1. 1. ~ 1. 20. 합계			20	400,000
2. 25.	AWS MESOTHERAPY HOME KIT	롤러 + 세럼	10	200,000
3. 3.	HR3 MATRIX KIT(FB)	롤러 + 필링	20	400,000
3. 3.	AWS MESOTHERAPY HOME KIT	롤러 + 세럼	5	100,000
3. 3.	SWS MESOTHERAPY HOME KIT	롤러 + 세럼	5	100,000
4. 5.	HR3 MATRIX KIT(FB)	롤러 + 필링	20	400,000
4. 27.	HR3 MATRIX KIT(FB)	롤러 + 필링	30	600,000
4. 27.	AWS MESOTHERAPY HOME KIT	롤러 + 세럼	10	200,000
5. 23.	HR3 MATRIX KIT(FB)	롤러 + 필링	30	600,000
6. 8.	HR3 MATRIX KIT(FB)	롤러 + 필링	40	800,000
1. 21. ~ 6. 30. 합계			170	3,400,000
1. 1. ~ 6. 30. 합계			190	3,800,000

끝.